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8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이병진・전진숙・이기헌

권칠승 · 임미애 · 조계원

황 희·송옥주·이상식

추미애 • 박상혁 의위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·스포츠·동아리 등 문화활 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초·중·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, 심신단련 등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, 미술·음악·체력단련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, 개인·법인·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

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)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여가를 활용하여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·스포 츠 및 기타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(이하 "무료이용 문화 시설등"이라 한다)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61조의2(청소년 무료이용 문화 시설등의 제공 활성화)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이 여가를 활용하여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예술·스포츠 및 기타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
	프로그램(이하 "무료이용 문화시설등"이라 한다)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.